

2011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축산관련 세제



송재현 공인회계사/세무사 | 대한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한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1.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 축산업자”에 한하여 사료 등 축산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규정의 시행시기가 2011년 7월 1일로 변경되었다(2011. 5. 30 법령공포).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 추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기자재에 10가지가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개정규정은 시행일(2011. 5. 30)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발작물피

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못이에 한한다)(2008. 2. 22. 개정)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2003. 12. 30. 개정)
3. 농업용 포장상재(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2003. 12. 30. 개정)
7. 차광망(연초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재배용에 한한다)(2007. 2. 28. 개정)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2003. 12. 30. 신설)
9.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만 해당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2010. 12. 30. 개정)

10. 축산업용 튜브(「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함)(2006. 2. 9. 신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한다)(2006. 2. 9. 신설)
13. 농업용 양수기(2006. 2. 9. 신설)
14. 법씨밭알기(2006. 2. 9. 신설)
15. 동력배토기(2006. 2. 9. 신설)
16. 동력예취기(2006. 2. 9. 신설)
17.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2007. 2. 28. 신설)
18. 화훼용 종자류(2007. 2. 28. 신설)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한다)(2008. 2. 22. 신설)
20. 버섯재배용기(2008. 2. 22. 신설)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2008. 2. 22. 신설)
22. 폐사축처리기(2008. 2. 22. 신설)
23. 축사세척기(2008. 2. 22. 신설)
24. 카우브러쉬(2008. 2. 22. 신설)
25. 축산 약취제거기(2008. 2. 22. 신설)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2008. 2. 22. 신설)
27. 농작물 지주대(2009. 2. 4. 신설)
28. 농업용 무인헬리콥터(2009. 2. 4. 신설)
29. 농업용 로더(2톤 미만)(2010. 2. 18. 신설)
30.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2010. 2. 18. 신설)
31. 동력제초기(2010. 2. 18. 신설)
32. 농업용 고압세척기(2010. 2. 18. 신설)
33. 농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2011. 5. 30. 신설)
34. 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인 것만 해당한다)(2011. 5. 30. 신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2011. 5. 30. 신설)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2011. 5. 30. 신설)

37. 축산용 정액희석제(2011. 5. 30. 신설)
38. 축산용 인큐베이터(2011. 5. 30. 신설)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2011. 5. 30. 신설)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2011. 5. 30. 신설)
41. 축사용 쿨링 패드(2011. 5. 30. 신설)
42. 축사용 워터컵(2011. 5. 30. 신설)
43. 축사용 바닥재(철재 바닥재만 해당한다)(2011. 5. 30. 신설)

3.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

7월 1일부터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의 무도학원의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수의사의 진료용역 중 가축과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면세가 유지된다.

4. 축사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2011년 7월 중으로 한·EU FTA 등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시행된다. 축사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그 부수토지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990㎡에 해당하는 면적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국회 재정위 의결(2011. 6. 23)을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7월 중 공포·시행 예정으로 시행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